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1. 23.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12호로 2021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의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칭) 혁신교육빌딩 건립의 건

- 신길5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부지에 청소년 교육특화 시설을 건립하여, 제도권 교육에서 시행하기 힘든 창의융합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영등포구 교육의 균형발전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상 재산

☐ (가칭) 혁신교육빌딩 건립의 건

구분	재산의 표시		소유자	건물 재산가액		비 고
	소 재 지	건 물(연)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신축	신길동 4961 (신길5구역 기부채납)	3,503.04㎡	영등포구	3,762	13,181,000	신축 공사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억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됨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가칭)혁신교육빌딩 건립」의 전은,

-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창의융합형 교육중심, 청소년 놀이쉼터, 학부모·학생 소통의 장, 진로 및 진학상담을 아우르는 교육전문 특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치는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지(신길동 4961번지)이며
-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임.
- 시설 규모는 대지면적 1,027.6㎡, 연면적 3,503.04㎡, 지하2층~지상4층 규모이며
- 소요예산은 총 131억 8,100만원으로 공사비 114억 1,300만원, 용역비 17억원 및 부대경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시비는 확보되지 못했음.
- 대상지가 속한 주변지역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급증하고 공공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복지시설 등이 없는 상황임.

영등포구 청소년 시설 등 현황

연번	시설명	위 치	비고
1	청소년문화의집	영등포로 64길 15(영등포본동)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영로22길36(영등포본동)	
3	청소년자율문화공간	5개소(영등포본동,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대림1동)	
4	구립도서관	3개소(대림, 문래, 선유)	
5	대학입학정보센터 진로직업지원센터	선유동1로 80(당산1동)	
6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문래로 110(문래동)	서울시립
7	하자센터	영신로 200(영등포동)	서울시립

○ 검토 결과

본 (가칭)혁신교육빌딩 건립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부족한 공공교육시설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영등포구 교육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시비 확보 등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구 재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취소포함)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